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6항”을 “제59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법 제45조의9”를 “법 제45조의17”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을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허가신청서 또는”을 “설립인가신청서 또는”으로, “설립허가신청서에”를 “설립인가신청서에”로 한다.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21까지를 각각 제58조의16부터 제58조의29까지로 하고,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고시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
 2. 위치도, 계획평면도, 조감도 등 도서
 3.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 등의 내역
-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11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으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및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고시한 경우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45조의1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사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 제2호, 법 제45조의1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

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의 전력,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에 관한 데이터 및 이와 유사한 데이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① 법 제45조의15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집·가공·활용의 목적

2. 수집·가공·활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3. 수집·가공·활용의 방법

4. 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 산업단지 데이터 중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자 이외의 제3자(정보 보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5(산업단지 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정보체계(이하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술·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의16(중전의 제5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13제1항제12호”를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로 한다.

제58조의17(중전의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13제5항”을 “법 제45조의21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5조의13제1항제7호”를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5조의13제1항제2호·제3호”를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5조의13제1항”을 “법 제45조의21제1항”으로, “제58조의8”을 “제58조의16”으로 한다.

제58조의18(중전의 제58조의10)제1항 중 “법 제45조의17”을 “법 제45조의25”로 한다.

제58조의19(중전의 제58조의11)제1항 중 “법 제45조의18”을 “법 제45조의26”으로, “법 제45조의13제1항”을 “법 제45조의21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20(중전의 제58조의12) 본문 중 “법 제45조의19”를 “법 제45조의27”로 한다.

제58조의23(중전의 제58조의15)제1항 전단 중 “제58조의14”를 “제58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의14제1항제1호”를 “제58조의22

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의26(중전의 제58조의18)제1호 중 “제58조의14제1항제1호”를 “제58조의22제1항제1호”로, “제58조의14제1항제2호”를 “제58조의22제1항제2호”로 한다.

제58조의27(중전의 제58조의19)제1항제3호 중 “제58조의14제1항제2호”를 “제58조의22제1항제2호”로 한다.

제5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책 기획 및 연구
2. 지정요청서 평가 관련 행정업무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별 사업실적의 평가 및 관리
4. 법 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단 및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원
5. 사업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6. 그 밖에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별표 1의2 제3호가목2)를 삭제한다.

별표 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업 종 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현행	개정안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운영 등) ① 제59조제7항-----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② (생략)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 법 제45조의17-----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

<u>외대상) ①·② (생략)</u>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u>설립허가신청서</u> 또는 <u>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외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u>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 ----- ----- ----- <u>설립인가신청서</u> 또는 ----- --- <u>설립인가신청서</u>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8(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조
---	--

<u>사에 관한 사항</u> 6. 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고시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
2. 위치도, 계획평면도, 조감도 등 도서
3.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 등의 내역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11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

<신 설>

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의 지정) ① 법 제45조의11제3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이 입지하는 산업단지에 대
하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
정을 위한 평가 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가점으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및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스마
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고
시한 경우 해당 지침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
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신 설>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
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 또
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
는 경우

3.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
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
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신 설>

45조의12제1항에 따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45조의12제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
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
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사업단지 촉진사
업의 시행기간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
조의14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
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 제2호, 법
제45조의14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신 설>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제58조의13(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제조공
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
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제조공
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
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물류, 폐
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의 전력, 에너지, 상
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
류에 관한 데이터 및 이와 유
사한 데이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신 설>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
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
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
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제58조의14(산업단지 데이터의 수
집·가공·활용) ① 법 제45조
의15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정보 보유자로부터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보유자에
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집·가공·활용의 목적
2. 수집·가공·활용하는 데이
터의 항목
3. 수집·가공·활용의 방법
4. 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 설>

불이익의 내용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 산업단지 데이터 중 개인
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자 이외의 제3자
(정보 보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
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단지 데이터의 수집·가공·활
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
업단지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5(산업단지 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정보체계(이하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술·장비·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의8(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13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제58조의16(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

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제58조의9(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13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58조의17(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 법 제45조의21제5항-----
1. 법 제45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1.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
2. 법 제45조의13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2.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 제3호 -----
3. 그 밖에 법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및 제58조의8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법 제45조의21제1항 - 제58조의16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10(업무의 지도·감독)	제58조의18(업무의 지도·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법 제45조의17</u> 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 <u>법 제45조의25</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58조의11</u>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u>법 제45조의18</u> 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u>법 제45조의13제1항</u>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u>제58조의19</u>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 <u>법 제45조의26</u> ----- ----- ----- ----- <u>법 제45조의21제1항</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제58조의12</u> (채권의 형식) <u>법 제45조의19</u> 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u>제58조의20</u> (채권의 형식) <u>법 제45조의27</u> ----- ----- ----- ----- -----.
<u>제58조의13</u> · <u>제58조의14</u> (생략)	<u>제58조의21</u> · <u>제58조의22</u> (현행 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와 같음)
<u>제58조의15</u> (총액인수 및 매출의	<u>제58조의23</u>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u>제58조의14</u> 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방법) ① <u>제58조의22</u> ----- ----- ----- ---. ----- ----- ----- -----.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u>제58조의14제1항제1호</u>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u>제58조의22제1항제1호</u> ----- ----- -----.
<u>제58조의16</u> · <u>제58조의17</u> (생략)	<u>제58조의24</u> · <u>제58조의25</u> (현행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17과 같음)
<u>제58조의18</u>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u>제58조의26</u> (채권의 기재사항) -- ----- ----- -----.
1. <u>제58조의14제1항제1호</u> 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u>제58조의14제1항제2호</u> 의 사항은 제외한다)	1. <u>제58조의22제1항제1호</u> ----- ----- ----- ----- <u>제58조의22제1항제2호</u>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u>제58조의19</u> (채권원부) ① 공단은	<u>제58조의27</u> (채권원부) ① -----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의1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3. 제58조의22제1항제2호----- ----- --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0 ⑤ 제58조의21 (생략)	제58조의28 ⑤ 제58조의29 (현행 제58조의20 및 제58조의21과 같음)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⑤ (생략)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정책 기획 및 연구
	2. 지정요청서 평가 관련 행정업무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별 사업실적의 평가 및 관리

	4. 법 제45조의13에 따른 사업단 및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원
	5. 사업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6. 그 밖에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407